

제327회 임시회
2014. 2. 18.(화)

심 사 보 고 서

-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4. 2. 18.(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2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2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2월 18일

-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견제시,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상업·공공청사·공
원용지 등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

○ 진천군과 음성군이 입주주민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양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변경을
요청하여,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 북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상지역 (교환)

구분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비고
진천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176㎡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176㎡	조정 후 양 군 면적변동 없음
음성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176㎡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176㎡	

○ 관련기관 의견

< 진천군 >

	의견
진천군수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지역의 주민생활권 일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계조정 필요
주민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진행지역으로 입주주민이 없으며, 개발지역인 덕산면 주민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없음
군의회	혁신도시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 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

< 음성군 >

	의견
음성군수	주민생활권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일치시키고 도시 계획시설 관리와 이전 공공기관을 고려, 경계변경 필요
주민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진행지역으로 실제 거주 주민이 없어 인근 주민(맹동면)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없음
군의회	혁신도시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 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

〈 충청북도 의견 〉

-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하고 양 군의회가 동의한 사항
- 이중 공부 등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 진천·음성 지역에 새로이 조성되는 혁신도시 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경계가 불합리하며,
 - 진천군과 음성군의 행정기관, 의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없음
- 본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 등을 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채택 의견 : “이견없음” (별첨 의견서 참조)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의견서
-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견서

충청북도의회는 2014년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접수된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진천군·음성군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방안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 : 이견없음

- 진천·음성 지역에 새로이 조성되는 혁신도시 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함.
- 각 군의 행정기관, 의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변경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반대 의견이 없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이라 판단되어,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견없음”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제616호
----------	-------

제출연월일 : 2014년 2월 1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진천·음성 혁신도시내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상업·공공청사·공원용지 등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
- 진천군과 음성군이 입주주민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양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변경 요청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

※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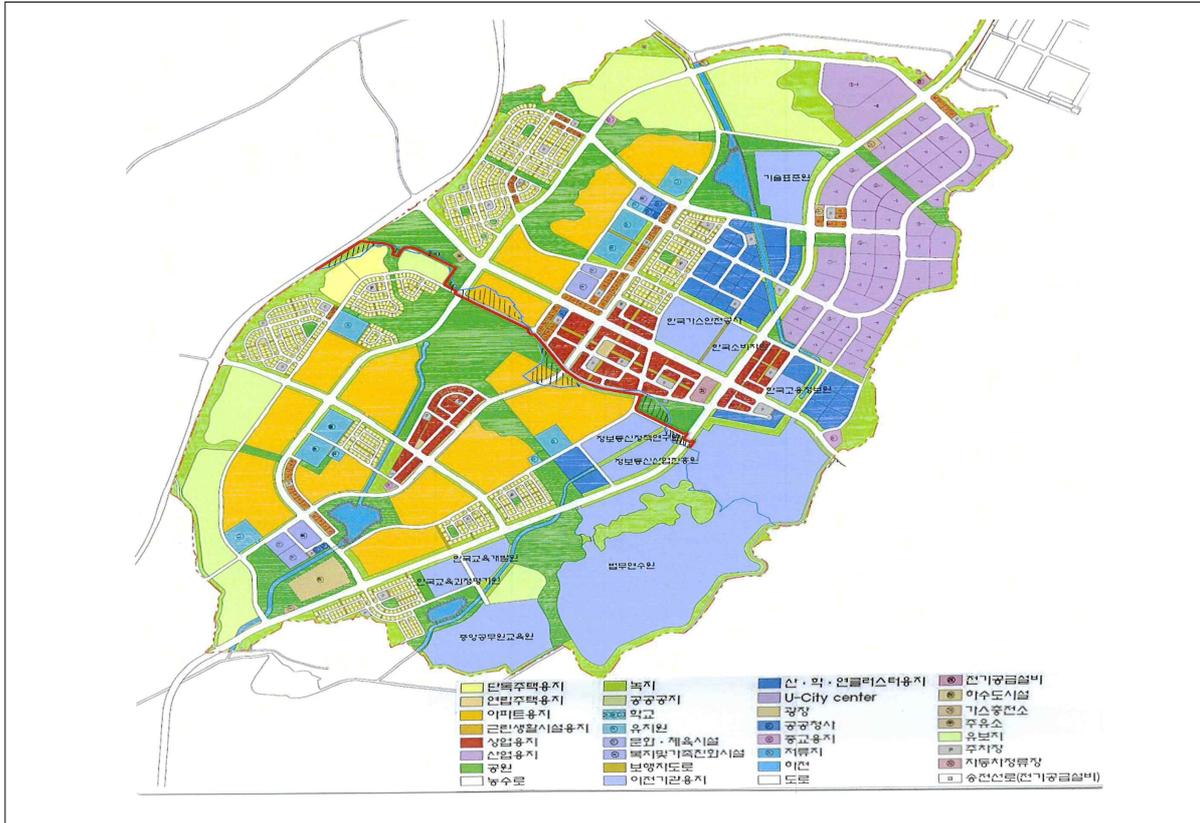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시군의회 의견수렴→시도의회 의견수렴→시도지사 건의
→검토 및 대통령령안작성(안행부)→국무회의 상정→재가 및 공포

3. 주요내용

- 대상지역 (교환)

구분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비고
진천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176㎡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176㎡	조정 후 양군 면적변동 없음
음성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176㎡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176㎡	

○ 위치도



4. 관련기관 의견

< 진천군 >

가. 행정기관

구 분	기 관 의 견
진천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지역의 주민생활권 일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계조정 필요
덕산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 필요

나. 주 민

-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 진행지역으로 입주 주민이 없으며, 개발지역인 덕산면 주민 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없음

다. 군 의회

- 혁신도시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 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

< 음성군 >

가. 행정기관

구 분	기 관 의 견
음성군수	• 주민생활권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일치시키고 도시 계획시설 관리와 이전 공공기관을 고려, 경계변경 필요
맹동면장	• 주민의견 수렴결과 경계조정을 반대하는 주민이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

나. 주 민

-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 진행지역으로 실 거주 주민이 없어 인근 주민(맹동면) 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없음

다. 군 의회

- 혁신도시 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

5. 경계변경에 대한 道 의견

-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하고 양 군의회가 동의한 사항
- 이중 공부 등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함

6.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

- 혁신도시 내 진천-음성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 의회 의견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